

제321회

임시회
2024. 4. 19.(금)

산업위원회 안건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28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 책무를 추가(안 제2조)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적용범위 지정(안 제3조제2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삭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안 제6조제2항)

3. 근거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첨 부
1.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를 “공중화장실등”으로,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음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 구조요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기준 및”으로, “방법에 따라 관리”를 “사항을 준수”로 한다.

제6조의 제목“(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등)”을“(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

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개방)과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 개방)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불법촬영 예방시설의 설치 등)”을 “(불법촬영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영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6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편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기준 및 ----- 사항을 준수-----.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개방)과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 개방)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1

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불법촬영 예방시설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공공건축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시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설인 안심스크린(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조제5항

-----.

제10조(불법촬영 예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환경과장 정 일 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

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 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024-29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봉곡리 다목적 공동창고를 봉곡리 마을회에 관리위탁함에 따라 해당 창고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수익금으로 사용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

2. 영구시설물 축조 내용

- 위 치 : 양산면 봉곡리 105, 106번지(봉곡리 다목적 공동창고)
- 사용면적 : 설치면적 150㎡이내(창고 지붕)
- 설치용량 : 30kw이내
- 축 조 비 : 3,800만원(축조비 전액 마을회 집행)
- 예상수익 : 월 60만(연 720만원)
- 사용기간 : 태양광시설 설치일로 부터 10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임대 종료후 10년 이내 2회 갱신 가능

3. 기타사항

- 영동군
 -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행정지원 및 시설물 사용 임대료 부과
 - 연간 사용료(임대료) 산정 : 공시지가×부지면적×지붕(옥상)지수×사용료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 경감

○ 주요 허가조건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담(마을회)
-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원상회복 공사비의 10% 이상)
- 수익금 사용 제한 : 다목적 공동창고 유지비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적 사용은 불가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0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 용어정리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호)
 - 근거법 개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명칭 정비
-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 사용료·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등 벌칙 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명시 (안 제35조, 안 제41조)
- 다자녀가구 기준 변경 (안 제36조제1항제11호)
 - 18세 이하의 자녀 수 완화 : 3명이상 → 2명이상

3. 근거법령 : 「수도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첨 부
1.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다음부터”를 각각 “(이하”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마친”을 “수료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단독주택이외”를 “단독주택 이외”로,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수선비용 및 누수요금 등도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으로 한다.”를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및 수선비용과 이들 설비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의”를 “이의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수도사용자”로 한다.

제23조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를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를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수도계량기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로 한다.

제35조 중 “별표 4”를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별표 4”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1호 중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를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사기”를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고지분(4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시행하는 제1호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마친 자 또는 제1호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생략)

② (생략)

제12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략)

②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부터 옥내까지의 급수설비, 단독주택이외의 경우 대지경계선 내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수선비용 및 누수요금 등도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 이외의 것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17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법 -----

수료한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독주택 이외-----

----- 급수설비

에 대한 관리 및 수선비용과 이

들 설비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

다. -----

-----.

제17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 이의

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수도요금(다음부터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제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도사용자

-----.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
--(이하 -----

-----.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 수도계량기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

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5조(수수료) 군수는 별표 4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수도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조항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로서 가정용인 경우

12.·13. (생략)

② (생략)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 -----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별표 4-----.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12.·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기-----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